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02930 선거무효확인 등
원	고	1.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023호(목동, 현대드림타워) 대표자 이사장 홍정선 2. 홍정선 시흥시 인선길 63, 228동 1101호(장곡동 806, 숲속마을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윤성환
피	고	서울특별시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신천동, 교통회관 11층) 대표자 이사 오성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황대희
변	론	중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은 피고의 정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따른 오성문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에 따른 오성문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은 피고의 정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체계 및 공동복리증진과 공익사업으로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법인이다.

나. 원고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의 정조합원인 주식회사 오토링크코리아가 2015. 10. 8. 조직변경한 법인이다. 피고는 2000. 4. 10. 서울특별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였고, 2016. 1. 25. 조직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다. 원고 홍정선은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다.

다. 피고는 2018. 12. 31.자로 기존 이사장 오성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8. 11. 16.경 2018. 12. 4. 이사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 홍정선은 피고의 정조합원인 원고 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피고 측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 준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후보신청을 거부하고 기탁금을 반환하였다.

마. 오성문은 위 선거에 단독입후보하여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2. 22. 피고 정기총회에서 이미 원고 조합의 정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조합은 언제라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정조합원 지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취지는 원고 조합이 현재 정조합원 지위가 아님을 전제로 새로운 가입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고 조합의 청구는 조직변경 후에도 새로운 가입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의 정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조합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의 조직변경 전 법인인 주식회사 오토링크코리아가 피고의 정조합원이었던 사실, 원고 조합이 2015. 10. 8.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항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기존 주식회사와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조직변경 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 정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이 다르고 운영방식도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의 의미를 포괄승계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위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문언에 반하고, 상법상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홍정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가 정관 기타 선거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 조합이 피고의 정조합원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2018. 12. 4. 실시되는 피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원고 홍정선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실, 원고 조합은 조직변경 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의 정조합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홍정선이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다른 사유는 보이지 않는바, 위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상 입후보자격이 있는 자의 입후보를 거부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후보자 등록신청 거부는 입후보자의 경쟁 기회와 선거인들의 선택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고, 원고 홍정선은 2015년경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람으로서 위 선거 당시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규정 위반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조합원이고, 피고가 2018. 12. 4.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태규	<u>심 태 규</u>	
	판사	이봉락	<u>이 봉 락</u>	
	판사	신재호	<u>신 재 호</u>	

정본입니다.

2019.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성기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